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청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5377

발의연월일: 2023. 11. 14.

발 의 자:정청래·정일영·이원택

신영대 • 이병훈 • 유정주

김병기 · 강선우 · 최혜영

서영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난을 겨우 버텨냈지만 고물가·고금리· 고환율 등 3고(高) 현상에 경제 침체까지 겹치며 버티지 못하고 경영 난을 겪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위기로 내몰리고 있음.

특히 경제가 어려울수록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은 더 큰 고통을 받게되는데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 경제마저 휘청이면서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임.

현행법상 재난 복구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,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설 복구에 대한 지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그 피해에 비해 지원규모가 현저히 부족하여 지원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소상공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에 대해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의 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 른 피해를 복구하고,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해 재기를 돕고자 함(안 제 66조제3항제5호의2). 법률 제 호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6조제3항제5호의2 중 "소상공인에 대한 지원"을 "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6조(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	제66조(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
조 등의 지원) ①・② (생 략)	조 등의 지원) ①·② (현행과
	같음)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	③
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	
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	
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	
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	
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	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	
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	
을 지급하거나, 제3조제1호나목	
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	
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	
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,	
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	
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	
다.	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5의2.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	5의2
조에 따른 <u>소상공인에 대한</u>	<u>소상공인이 운영</u>
지원	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
	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

	<u>는 동산</u>
6. ~ 9. (생 략)	6. ~ 9. (현행과 같음)
④ ~ ⑦ (생 략)	④ ~ ⑦ (현행과 같음)